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4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66조제3항)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자동차의 총 수명(연료생산, 배터리제조, 주행)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실현 가능한 것을 근거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병행보급 필요성을 제시함. 동 계획에서는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목표를 2025년 283만대(신차 판매 51%), 2030년 785만대(신차판매 83%)로 설정함.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약 188만대가 등록되었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목표가 150만대를 이미 달성함.

개정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 2030년 목표로 설정한 400만대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7,580억원(연평균 2,5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됨.

## (2)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66조제4항)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전기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로 정하고 있고, 수소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20만대, 2030년 85만대로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기차는 약 65만대이고, 수소차는 약 4만대임.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목표인 113만대와 20만대를 2024년 9월 기준으로 달성하지는 못함.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및 2030년 목표로 설정한 대수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

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및 수소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공고한 대수는 전기자동차 134,490대(전기승용차 95,592대, 전기화물차 37,000대, 전기승합차 1,898대)와 수소자동차 6,849대임. 전기자동차 대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만원에서 1,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조 3,558억원(연평균 4,5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3)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67조)

개정안은 경형[배기량 1천cc이하 미만(경형전기자동차의 경우 길이, 너비, 높이 기준만 적용)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

터 이하] 승용자동차·승합차·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는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인 경형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임<sup>1)</sup>. 경형자동차는 차량 주행에 에너지를 덜 소비하여 친환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4년 10월 자동차기준 등록자료 통계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200만대로 등록된 자동차 2,623만대 중 약 200만대로 7.6%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중대형자동차와 비교하여 경형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차량 구매자들이 경형자동차를 구매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988억원(연평균 94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다음으로, 개정안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

1)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2년판) 1066면, 삼일인포마인, 2022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의미함<sup>2)</sup>.

전방조종자동차 특례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자동차들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했고, 2007년 이후부터는 현행 승용자동차세율로 과세가 전환되었음.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서민 생계형 자동차인 특성과 해당 자동차가 생산이 단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도까지 신규로 등록된 경우에만 폐차시까지 승합자동차 중 소형 일반버스 세율(대당 65,000원)을 적용하도록 2008년에 개정됨<sup>3)</sup>.

개정안을 통해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2027년까지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방조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3억원(연평균 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전방조종자동차의 구체적인 예로는 봉고, 베스타, 타우너, 프레지오, 그레이스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생산이 단종됨(출처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67면, 삼일인포마인, 2022)

3)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67면, 삼일인포마인, 2022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